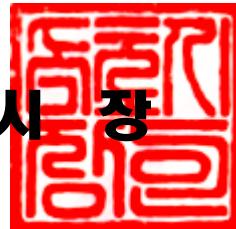


공 고

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4월 23일

속초시장



1. 담배소매업 폐업내역

상호명	성명	영업소재지	소매구분
광성유리	김희순	속초시 영랑동 157-3	일반
농협쌀전문판매점	김상열	속초시 교동 946	일반
미강슈퍼	고금희	속초시 청학동 482-321	일반

2. 공고기간 : 2008. 4. 23 ~ 2008. 4. 29

[신규지정 신청안내]

- **신청기간** : 2008. 4. 30 ~ 2008. 5. 8
- **신청대상** : 위 폐업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
- **접수처** : 속초시청 종합민원실(본관3층 지역경제과 경유)
- **제출서류**
 -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. (본관3층 지역경제과에서 작성가능)
 -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**지정방법** :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
(단, 담배사업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함)
- **기타사항**
 -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부여 됨
(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)
 - 국가유공자증명 서류,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

※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지역경제과(☎639-2376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